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

제 정 2016. 9. 10.
개 정 2016. 9. 27.
개 정 2020. 10. 14.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력비협회(이하 “장애인력비협회”라 한다) 정관 제3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0. 10. 14.>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협의회는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등록지도자로 제6조 제2항의 자격자에 적용한다. <개정 2020. 10. 14.>

제4조(제정의무)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지도자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0. 10. 14.>
② 이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0. 10. 14.>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0. 14.>

1. 지도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2. 경기분야 제도개선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력비협회장 선거인단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장 협의회 구성 및 회의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이내 <개정 2020. 10. 14.>
 3. 위원 3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제1항의 위원은 정기 등록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
1. 최근 3년 내 장애인력비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4회 이상 참가한 자 <개정 2020. 10. 14.>
 2. 10년 내 장애인력비협회 국가대표지도자(코치 이상)로 선임된 경력 자
 3. 장애인력비협회 전임지도자나 실업팀지도자로서 선임된 경력 자
- ③ 정관 제25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장애인력비협회장이 장애인력비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 선임) ① 협의회 위원장은 장애인력비협회에 등록된 지도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개정 2020. 10. 14.>

- ② 위원은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구성한 후 사무국에 보고한다. <개정 2020. 10. 14.>
- ③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 ④ 부위원장을 2인 이상 선임할 경우 순서를 협의회에서 정해야한다. <개정 2020. 10. 14.>
- ⑤ 위원장 선거에 관한 투표인단의 구성방법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력비협회 선거인 선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을 선출하고 장애인력비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4.>

1. 협의회 위원장
 2. 위원 중 선거인으로 선출된 자 1명
- ② 제1항의 선거인은 장애인력비협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하며, 만약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회장 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2020. 10. 14.>

제9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력비협회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력비협회 정관 제23조제2항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선거인은 임기 시작 전이라도 이 규정 제8조제2항에 의거 선출된 당선자가 된다.

③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장애인력비협회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제7호, 제8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촉 된다. <개정 2020. 10. 14.>

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정관 제25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으로 선임된 기간 동안 지도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7.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직위를 잃었을 경우
8. 제6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이후 해당될 경우

제12조(회의소집) 위원장은 장애인력비협회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협회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14.>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 3장 지도자 양성 교육

제16조(교육실시) ① 장애인력비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 및 자격증을 해당 지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공정한 경기운영, 지도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경기의 이론, 실기 교육 등 당해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도자의 도덕성 함양과 관련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종료 후 반드시 자격증(수료증)을 발급해야하고 발급대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신설 2018. 3. 28.>

제17조(급수) 지도자의 급수별 운영은 표-1로 한다. <신설 2018. 3. 28.>

부 칙(16.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표-1> 지도자 급수별 운영 현황

급수	자격 조건	활동 범위
International Coach	1.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	
Zonal International Coach	1.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	
Asia Coach	1.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	
국내 1급	1. 2급 자격 소지자 중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최근 3년간 10경기 이상의 경기를 지도자로 활동 하여 입상한 자 3. 승급 테스트에 통과한 자 4. 1~3호에 해당하는 자중 승급테스트에 통과한 자	국가대표 감독 지도 가능
국내 2급	1. 3급 자격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자 2. 장애인럭비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중 3회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3.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승급 테스트에 통과 한 자	국가대표 감독 지도 가능
국내 3급	1. 장애인럭비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도자 강습회를 참가하여 실기 및 필기시험 70% 이상을 통과한 자 2. 그 외 유사종목의 경험이 있어서 교육을 이수한 자 3. 선수출신의 경우 실기 시험 면제 4. <u>3급의 경우 2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u>	국가대표 감독 지도 가능